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8조제3항·제4항”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차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 및 타목에서 같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2) 대규모유통업자	법 제22조제4항제5호의2			
		300	600	1,000
		1,500	3,000	5,000

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 제5호의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22조 제4항 제5호의4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생략)	제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u>제8조제3항·제4항</u>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 ----- ----- ----- ----- ----- <u>제8조제1항·제3항·제4항</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연 락 처	(02) 2110 - 1552